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81호 2018. 10. 11.(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511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 2
- 사천시 조례 제1512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사천시 조례 제1513호 사천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9
- 사천시 조례 제1514호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
- 사천시 조례 제1515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35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673호 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 45
- 사천시 규칙 제674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47
- 사천시 규칙 제675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1
- 사천시 규칙 제676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79호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53
- 사천시 고시 제18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55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조례 제151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 예보·경보,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제2장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3. 장비·인력 등의 동원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6.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요청
7.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8.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9.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
10.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시장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시 홍보 업무담당 부서장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으로 하되, 해당 국·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실무반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 수행을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별표 4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5
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6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1. 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소장
3.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시 관할 구역 내의 관계 기관의 장
 - 나.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 재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유·협조체계의 구축) 본부장은 재난수습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도대책본부 및 사천시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18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근무명령 등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구 분		업무와 역할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파)통합지원본부 철수시 업무인수 및 반별 재분장 하) 재난현장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거) 재난대응, 피해복구 등 총괄 예산 확보 및 관리
	4)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 업무 협조 동향업무, 미담수범사례 파악 등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사) 사망자 장례지원 등 아) 그 밖에 긴급생활안정 및 구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폐기물처리 관련 예산확보, 인허가 등 업무 지원 마)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 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통신사 지역별 비상연락체계 구축 마)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관련 예산확보 및 지원 라)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구 분	업무와 역할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 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 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다) 그 밖에 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피해자, 유가족지원 포함)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 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이재민, 유가족 심리지원 등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구 분		업무와 역할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 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상황관리총괄반에서 통합운영)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마)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각종회의 준비)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사)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아)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자)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문자서비스 송출) 요청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시스템운영 파) 통합지원본부 철수 시 업무인수 및 재분장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3)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동향업무, 미담수범사례 파악 등 다) 상황근무자 배치 근무명령 등 라) 재난현장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재난대응, 피해복구 등 총괄 예산 확보 및 관리
나. 협업 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구 분	업무와 역할
다.재난대응 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라. 현장 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학습센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안전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과
6. 행정안전부	가. 공공청사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위험물(폭발·화재) 사고 라.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마. 다중 밀집(이용)시설 대형화재 1)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화재 2)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노유자시설 화재 3) 전통시장, 대형마트 화재 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화재 5) 터미널, 역사 화재 6) 공연장, 다중이용업소(영화관, 노래방 등) 화재 7) 관광숙박시설 화재 8) 의료시설(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화재 9) 대형목욕탕 화재 10) 산업단지, 공장 화재 11) 다중이용 체육시설 화재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사.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1) 유선 2) 도선	회계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 시설관리부서 주안생활자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환경위생과 산단관리과 체육지원과 재난안전과 문화관광과 건설수도과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시설 포함)	체육지원과
	나. 축제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일반행사 포함)	해당부서
	다.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수도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위생과 건설수도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지역경제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건설수도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지역경제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녹지공원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별표 3]

시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괄 조정 관	차장	본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시 대책본부 운영상황	시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시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시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별표 4]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8조제1항)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비상1단계	▶ 「기상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 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비상2단계	▶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비상3단계	▶ 기상특보 중 대설경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재난예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나. 지진 및 화산	비상1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비상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상3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별표 5]

자연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2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지진(해일) 및 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5+a+β명		
	반 장	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및 행정팀장		
	상황관리총괄반 (4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1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재난안전과 1명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명)	재난안전과 1명	
		행정지원팀(1명)	행정과 1명	
	협업기능반 (a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건축과, 건설수도 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 하수 도사업소 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교통행정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지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 지역본부진주시사, 진주시상대, 군부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7+a+β명		
	반 장	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및 행정팀장		
	상황관리총괄반 (6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1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재난안전과 2명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	재난안전과 2명	
		행정지원팀(1명)	행정과 1명	
	협업기능반 (a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건축과, 건설수도 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 하수 도사업소 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교통행정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 지역본부진주시사, 진주기상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다. 비상 3단계

분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8+a+β명		
	반 장	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및 행정팀장		
	상황관리총괄반 (7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2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안전과 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재난안전과 2명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	재난안전과 2명	
		행정지원팀(1명)	행정과 1명	
	협업기능반 (a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건축과, 건설수도 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 하수 도사업소 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교통행정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 지역본부진주시사, 진주시상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별표 6]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 기준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무반	인원	총 10+a+β+γ 명		
	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주무팀장		
	재난상황총괄반 (9명)	상황관리총괄팀(3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수습상황과악팀(4명)	사회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행정지원팀(2명)	행정과 1명 기획예산담당관 1명	
	협업기능반 (a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교통행정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재난상황총괄반에서 협업)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 지역본부진주시사, 진주시상대, 군부대 등		
현장 지원반(γ) (협업기능반에서 협업)		재난수습 주관 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 재난대응협업반, 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조례 제151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3명” 을 “14명”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조례 제151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앞아야 한다” 로 한다.

제14조의2 중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60일 전까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조례 제151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
3. “귀농”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다른 산업에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사천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농한 사람을 “귀농인” 이라 한다.

4. “귀촌” 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사천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촌한 사람을 “귀촌인” 이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천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
 5. 유희농지·유희시설 정보 제공 지원
 6.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8.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0.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 ②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5.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조례 제151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 사천미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천시 사천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 이란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 란 전시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시설) 미술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대설비 :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등

제4조(사용허가) 시장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개인(단체) 작품 전시 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 단위 행사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미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전시를 위한 설치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③ 미술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 질서를 유지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및 공익에 반하는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 또는 사천문화재단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활동 및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전시활동 및 행사

다. 기타 공공기관의 정부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시활동 및 행사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전시활동 및 행사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미술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2. 제8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2.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전시, 행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전시작업 시 미술관의 안전수칙과 전시 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전시 개시 최소 5일 전까지 미술관 관리자와 전시 진행 등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전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미술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여건상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미술관의 수탁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 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581 호

[별표 1]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료(제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간	할인율	사 용 료			비고
			m ² 당 단가	기 본 료 (6일 기준)	사 용 료 산정방법	
전시실	7일 미만	0%	30	0	기간×m ² 당 단가×사용면적	
	7일~14일	5%	29	57,600원 (6일×320m ²)	기본료+ [(기간-6일) ×m ² 당 단가×사용면적]	
	15일~20일	10%	27			
	21일~30일	15%	26			
	31일 이상	18%	25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간	할인율	사 용 료			비고
			1일 단가	기 본 료 (6일 기준)	사 용 료 산정방법	
냉·난방	7일 미만	0%	7,500	0	기간×1일 단가	
	7일~14일	5%	7,120	45,000원 (6일×7,500원)	기본료+ [(기간-6일)×단가]	
	15일~20일	10%	6,750			
	21일~30일	15%	6,370			
	31일 이상	18%	6,150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단 체 의 주요사업				
운영기간				
자산현황	동 산		기타자산	
	부동산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운영
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인

사 천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규칙 제67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행정감사규칙”을 “사천시 행정감사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법인 및 보조단체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는 2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규칙 제67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통지) 시장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분납 시 사용료 1회분은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하며, 2회분은 허가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만료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통지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승 인 번 호 :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허가내역	사용기간	
	용 도	
	허가조건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준수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사천미술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남/여)
단체명 :
2. 사용 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 면 종 류 : (전액, 반액)
6. 감 면 사 유 : (구체적으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 하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규칙 제67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5조” 를 “제18조” 로 한다.

제7조 중 “제15조” 를 “제17조”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규칙 제67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관리·운영 조례” 을 “관리·운영조례”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고시 제2018-179호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사천시 사남면소재지 일원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5,95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 계			5,950	
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			3,740	
	사남 문화·복지 센터	문화복지센터 조성 3,799㎡	3,410	
	교통ICT 확충사업	버스운행정보 시스템 설치 2개소	20	
	경로당 리모델링	경로당 리모델링 1개소	100	
	사계절 다목적 구장	다목적구장 설치 882㎡	210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지 역 경 관 개 선			1,450	
	중심가로 보행자중심 도로 정비	보도 정비 540m 주차장 조성 567㎡	690	
	수변산책로 정비	전망데크, 쉼터 및 주차장 1,355㎡	760	
지 역 역 량 강 화			400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1식	160	
	주민 복지 프로그램	1식	120	
	홍보 마케팅/컨설팅	1식	50	
	운영지원	1식	70	
부 대 비 용			360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2020년(4년간)

7. 기본계획 보고서는 사천시청 지역개발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지역개발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81호

사천시 고시 제 2018-18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10. 11.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8-2호 (2018. 6. 29.)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건설수도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마도항 부잔교 이설 및 수리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마도동 79-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18-10호
 - 공사기간 : 2018. 10. 3. ~ 2018. 10. 29.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18. 10. 2.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581 호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